

**‘종업원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제민주변호사협회(IADL)-아시아태평양법률가연맹(COLAP)  
공동 국제진상조사단 예비 조사결과**

1. 본 국제진상조사단은 국가인권위원회와 만나 위원회의 조사 결과 발표가 부당하게 지연되는 점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였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사무총장은 ‘종업원 사건’의 조사 결과 발표가 지연되고 있다는 사실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사무총장은 이 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가 나왔으나 아직 발표되지 않았으며 가까운 미래에 발표될 것을 알렸습니다.

2. 본 조사단은 국가인권위원회의 결과 발표의 지연 그 자체가 종업원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임으로, 결과 발표가 지연되는 것에 대해 어떠한 정당한 이유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UN 인권이사회 특별보고관은 서울의 UN인권사무소에서 지배인과 두 명의 종업원을 만나 면담하였으며, 해당 종업원들을 “피해자”로 언급하였습니다.

3. 본 조사단은 관련 개인과 기관에 대한 조사 및 기소가 지연되는 것을 보아 정부 기관과 관료들이 이 사건에 대한 그 어떤 책임도 지지 않고 있다고 추론하며, 또한 이러한 비양심적인 지연은 국가 정책에 의해 영향을 받았다는 입장입니다.

4. 본 조사단은 서울의 기관, 조직 및 개인에게 이삼십대인 열두 명의 종업원들이 정부 또는 다른 기관으로부터 가족과 상봉할 수 있도록 가능한 방법과 수단을 통해 도움을 받은 적이 있는지 질문하였으나, 이들이 가족과 만날 수 있도록 조치가 취해진 적이 지금껏 없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본 조사단은 이는 세계인권선언(1948) 및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협약(1966) 하에 규정된 “피해자”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로 간주합니다. “가정은 사회의 자연적이고 기초적인 구성단위이므로 사회와 국가의 보호를 받을 자격이 있다.”

5. 본 조사단은 이산가족상봉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각계각층에서의 교류와 협력을 촉구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에 대한 판문점 선언에도 불구하고 “민족 분단으로 발생한 인도적 문제를 시급히 해결”하고 “이산가족·친척상봉을 비롯한 제반 문제들을 협의 해결”하기 위해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어린 피해자들이 가족과 만날 수 있도록 지원을 전혀 받지 않았다는 사실에 유감을 표합니다. 이는 세계인권선언(1948)의 16.3조와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협약(1966)의 23.1조를 위반한 행위입니다.

6. 본 조사단은 대한민국 정부와 기관, 공직자들에게 피해자들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있는 가족들과 만날 수 있도록 신속히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합니다. 이는 인간의 근본적인 권리이며 두 정부가 최고위치에서 서명한 판문점 선언 (2018년 4월 27일)과 평양 공동 선언 (2018년 9월 19일)의 문자와 정신에 부합하는 것입니다.

7. 열두 명의 피해자들은 중국에서 식당 지배인의 감독 하에 일했던 종업원들로서 말레이시아를 경유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였고, 서울에 도착하기 전 말레이시아의 대한민국 대사관에 있었습니다.

8. 본 조사단은 사건을 조사하고 지배인 및 종업원들과 연락을 하고 있음을 밝힌 기자와 면담

을 가졌습니다. 피해자들은 그들의 여권을 가지고 있던 지배인에게 속임을 당해 말레이시아의 대한민국 대사관을 거쳐 대한민국으로 오게 되었다고 기자에게 폭로하였습니다. 기자는 일부 종업원과 지배인이 대한민국에 불법적인 방식으로 입국하게 된 과정에 대해 폭로하길 원하고 있다고 본 조사단에게 알렸습니다.

9. 본 조사단은 피해자들이 현재 고립으로 인해 무력한 상태임을 들었습니다. 그들은 텔레비전에 나와 면담을 하고 오해야 키타나 특별보고관과 만나 그들이 대한민국에 속임을 당해 입국했다는 점을 알렸으며, 일부 피해자들은 국가인권위원회와 소통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이들은 관련 도움을 받지 못했고 가족과 연락할 수 있는 이는 없기에 무력하고 절망적인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지배인은 전 작전이 국가정보원의 관료들에 의해 실행된 것이라고 밝혔으나 최고당국의 개입으로 인해 해당 면담의 방영은 한 차례 연기되었습니다. 이 방송에 참여한 네 명의 종업원들은 자발적으로 대한민국에 온 것이 아님을 확인했습니다.

10. 본 조사단은 기자와의 면밀한 만남을 통해 전 작전이 국가정보원의 지시 하에 추진되었을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총선 며칠 전에 국가정보원의 개입이 이루어졌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배인의 진술). 대중 방송 시스템을 통한 폭로의 중대성을 고려했을 때 국가정보원의 개입에 대해 대한민국의 검찰 기관 및 최고 단계에서 조사가 진행되지 않은 점에 대해 우려를 표합니다. 특별보고관이 기자회견에서 발언한 대로 만약 한국에 속임을 당해 오게 되었다는 피해자들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이는 범죄행위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11. 본 조사단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에 소속된 변호사들의 반복된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 어떤 공직자 또는 기관도 법을 초월할 수 없으며 본연의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따라서 신속한 조사와 기소는 피해자들의 정의에 관한 문제일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시민들의 공통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12. 본 조사단은 서울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와의 면담에서 유엔인권사무소가 여종업원들이 서울로 보내졌고 북한에 있는 가족들과 연락이 차단되어 고립되어 있는 상황에 대해 조사를 진행했는지 문의했습니다. 서울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2013년 3월21일 유엔인권위원회 결의안에 따라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의 권한은 오직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의한 인권침해에 대해 조사하고 보고하는 것이라고 답변했습니다. 본 조사단은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에게 많은 국가에서 인권침해가 자행되고 있는데 특정한 나라만을 조사하는데 권한을 행사하는 것은 인권을 침해 당한 피해자들에게 초점을 맞추기보다 인권의 정치화를 유발하는 차별적인 일이라고 답변했습니다.

13. 서울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키타나 유엔인권이사회 특별보고관이 지배인과 12명의 여종업원을 만났고 언론에 보도했다는 사실을 알고있음을 확인해주었습니다.

14. 우리는 열두 명의 여종업원들이 가족이나 기관의 어떠한 지원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우려하며 한국의 고위기관을 비롯한 관련 당국에 시급히 여종업원들이 서울에서 가족들과 재결합할 수 있게 해주기를 요청합니다.

15. 이 보고서는 본 국제진상조사단이 평양을 방문한 이후 9월 말에 완결될 것입니다.